

공고 제 2013 - 666호

자동차검사 기간경과, 자동차검사 명령서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에 의거 검사기간 1차·2차경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05일

속 초 시



아 래

1. 대상자 : 한금선 외 83명
2. 공고기간 : 2013. 11. 05 ~ 2013. 11. 24
3. 서류의 명칭 :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안내문,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
4. 서류의 내용 및 반송사유 : 붙임 내역서 참조
5. 문의처 : 속초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33-639-2379)